

의안번호	2212238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5.11.26.
추계번호	25D44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현역병의 모집 등) 신설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을 선발하는 때에는 현역병으로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됨(제3항) 국방부장관은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 고충 처리 현황 및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참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참부근거규정
1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현역병의 모집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2025년 기준 전체 군인 중 여군 비율은 장교 11.8%, 부사관 10.5%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병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병역법」 제3조제1항1)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표 1] 여군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반기)
장교	전체	69,600	69,000	68,200	67,800	67,600
	여군	6,200	6,700	7,100	7,400	8,000
	여군 비율	(8.9)	(9.7)	(10.4)	(10.9)	(11.8)
부사관	전체	121,400	123,300	121,900	117,100	112,700
	여군	9,500	10,600	11,300	11,500	11,800
	여군 비율	(7.8)	(8.6)	(9.3)	(9.8)	(10.5)
병	전체	343,600	308,400	287,300	286,000	272,900
	여군	0	0	0	0	0
	여군 비율	(0.0)	(0.0)	(0.0)	(0.0)	(0.0)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현역병 선발 시 현역병을 지원한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여성 지원병제 도입 시 입영판정검사 관련 직접적인 비용으로 여성 현역병 지원자에 대한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포함) 지급, 여성 지원자에 대한 검사장 확충, 시설·장비·인력 확충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현재 11개 검사장을 운영 중이며, '25년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른 검사인원 증가로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을 증축하였으나, 1일 검사인원은 186명 수준으로 1일 적정인원 155명을 초과한 상황임

－ 참고로, 경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 증축과 관련하여 168.4억원(시설확충비 154.8억원, 장비·집기 구입비 13.6억원)이 소요됨

○ 또한, 현행 검사는 남성 기준으로 설계된 검사이므로, 여성 모집 시 검사의 안정적 운영 및 정밀한 검사를 위해 검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여성 현역병 선발 시, 여군 확대에 따라 화장실, 휴게실, 숙소 등 여군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여성지원병제 도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여성충원 규모, 입영판정검사 관련 직접적 비용, 여성편의시설 확충 규모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